

“산업폐자원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 한국 산업 폐 자원 공 제 조 합

Korea Industrial Waste-Resources Mutual-aid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시설 관리담당  
제 목 환경부 「신규 환경제도 상담회」 운영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16년 신규 환경제도와 관련하여 「신규 환경제도 상담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상담회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에 상담대상자를 신청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업체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16.5.20(금) 12:00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메일(dabin@keiti.re.kr)로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 5. 31(화) ~ 6. 3(금)

나. 장 소 : 코엑스 A, B Hall

다. 주요내용 :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등  
2016년 신규 환경제도 및 개선, 건의사항

라.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688

※ 단위제도정책에 대한 신청자가 3명 미만인 경우 전화상담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환경제도 상담회」 관련 붙임 자료는 조합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2016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 현황 1부.

2. 신청양식 1부. 끝.

## 한국 산업 폐 자원 공 제 조 합 이 사 장



담 당 이 경 대 팀 장 한 인 성 사무국장 장 기 석 상근부이사장 진 원 기 이사장 박 무 웅  
협 조  
시 행 한공조 2016 - 224호 (2016. 5. 13) 접수  
우 0757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 www.kiwrma.or.kr  
전 화 02-718-7900 전 송 02-718-7171 / kiwrma@kiwrma.or.kr / 비공개

## 2016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 현황

제 목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①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된 나프탈렌 등 5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유예기간(~'15.12.31) 만료에 따라 '16.1.1부터 폐수배출시설에서 同 물질의 기준치 초과 시 행정처분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1.1)/ 수질관리과</li> </ul>
② 생태독성 적용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독성 기준 적용에 있어 완화된 기준으로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에 대해서 '16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TU 4→2 또는 8→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1.1)/ 수질관리과</li> </ul>
③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포 후 6개월 이후)/유역총량과</li> </ul>
④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증·기탁·기관·교환 대상 생물자원의 범위</li> <li>○ 기증 등이 절차에 관한 사항</li> <li>○ 생물자원관리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9.25)/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li> </ul>
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있으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협의기간은 20일로 단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6.1.1)/국토환경정책과</li> </ul>
⑥ 사전적격심사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토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제2항('16.1.21)/국토환경정책과</li> </ul>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추진 성과를 평가</li> <li>- 연도별 성과보고서 평가(차년도 3월 31까지)</li> <li>- 연도별 성과보고서 제출(차년도 4월 30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15.9.3월)/폐자원관리과</li> </ul>
⑧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병 회수·재사용촉진을 위해 빈용기보증금 인상(소주: 40→100원, 맥주: 50→130원) 및 보증금 지급거부에 대한 소비자 신고보상제 등 도입</li> <li>※ 빈병 반환 시 보증금은 돌려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21)/자원재활용과</li> </ul>
⑨ 폐기물의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도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폐기물 항목과 재활용의 용도와 방법을 열거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파지티브 체계에서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 ('16.7.21)/자원재활용과 (재활용관리제도 선진화 T/F)</li> </ul>

제 목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⑩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종 확대	○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6종→20종)	○ 대기환경보전법('16.1.1) / 대기관리과
⑪ 도로재비산먼지 이동 측정운영사업	○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측정 및 정보공개제도 도입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16.1.1/대기관리과
⑫ 물 재이용 용도, 수질 기준 등 현실화	○ 인체접촉 여부,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물 재이용의 용도와 수질기준 조정 ○ 공업용수는 수요처의 용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완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3.5)/생활하수과
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등 합리화	○ 공고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서류 간소화 (사업계획서 제출 폐지) ○ 기술진단문기관 행정처분 완화 ○ 개인하수처리설 기술검토 강화	○ 하수도법 시행규칙 ('15.11.6)/토양지하수과
⑭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추정, 정보청구권 등 신규 환경법리 법제화로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 ○ 원인제공자 미상·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 신속하고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국가예산 지출 최소화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6.1.1*)/ 정책총괄과 * 보험규정은 '16.7.1 시행
⑮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 사업비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수금 미납 시 납부를 독촉하고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미정)/환경기술경제과
⑯ 파생모델별 환경표지 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 파생제품별 인증에서 제품별 인증 방식으로 전환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16.2.1)/환경기술경제과
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화 대상 확대	○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증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 * 430㎡미만 사설 어린이집, 유치원은 '18.1.1부터 대상임	○ 환경보건법 제23조 ('16.1.1)/환경보건정책과
⑱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공개	○ 화학물질 통계·배출량조사를 완료한 후 국가안전·영업비밀 이외에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공개	○ 화학물질관리법('16.7.1) / 화학안전과

## 신청양식(예시)

①신청자 정보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홍길동	한국산업/대리	010-1234-5678, id@mail.co.kr
②상담희망 일시		
㉠1순위	㉡2순위	㉢3순위
5월31일 오전	6월1일 오후	6월2일 오전
③상담신청 내용		
한국산업 대전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료 문의		

## 신청양식

①신청자 정보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②상담희망 일시		
㉠1순위	㉡2순위	㉢3순위
③상담신청 내용		